

1995. 12. .

光州廣域市西區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議 會 運 營 委 員 會

光州廣域市西區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 年 12 月
議會運營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1995年 12月 26日
- 나. 提 出 者 :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 다. 回附日字 : 1995年 12月 26日
- 라. 上程日字 : 1995年 12月 26日
- 마. 開催回數및日數 : 1回(95年 12月 26日)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監査室長 李 龍 玉)

가. 提案事由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현행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토록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승인함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켜 운영

나. 主要骨子

-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개정
- 현행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 국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 함.
(제명, 제1조, 제2조)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명시하는 규정 삭제
(제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현행 의회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토록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으로
- 의회사무기구를 격상시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집행부 국단위 보조기관과 동등하게 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4. 質疑 및 答辯要旨書 : 생 략

5. 檢討 要旨 : 없 음

6. 審査 結果 : 원안 의결

7. 少數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事項 :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를 “사무국의 설치에”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과 제3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무직원의 정수”를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9명으로 하며”를 “의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제명 : <u>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u>	제명 : <u>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사무국의 설치에</u> ----- ----- -----.
제2조(조직)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u>사무과장과 직원</u> (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u>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u>	제2조(조직) ①----- ----- <u>사무국장</u> ----- ----- <u>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u> ----- -----.
② <u>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u>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 휘, 감독한다.	② <u>사무국장</u> ----- -----.
③ <u>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u>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③ <u>사무국장</u> ----- -----.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수는 19명으로 하며, 그 직급 별 정원을 <u>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 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필요한 공 무원을 두되, ----- ----- -----.